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59092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6,032,872원 및 그 중 20,544,300원에 대하여 2024. 4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로, ‘채무자’는 ‘피고’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민철

별지